

1. 目標 達成度

1) 金融實名制의 目標

- 정부가 표명한 金融實名制의 目標은 “金融去來의 正常化를 기하여 經濟正義를 實現하고,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는 것임.
- 좀더 부연하면, 금융실명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不正腐敗 일소
 - 政經癒着 근절
 - 地下經濟 양성화
 - 富의 偏在 시정
 - 資金 配分 歪曲의 시정

2) 目標 達成度 點檢

- 不正腐敗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副作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음.
- 실명제의 실시로 야기된 公務員 社會의 萎縮은 국가 경제에 否定的 波及 效果를 초래하였음.
- 政經癒着, 즉 陰性的 政治 資金의 收受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임.
- 選舉法이나 政治資金法은 실명제에 맞게 개정되었지만, 국민의 정치 의식과 윤리관 역시 제고되어야 정경유착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임. 국민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地下經濟의 陽性化도 아직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私債市場은 위축되었다고 보이지만 사채시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금융의 보완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채시장의 잠재성은 그대로 있다고 보여짐.
- 사채시장 자금의 상당 부분은 불법 신용카드 대출이나 금융기관과의 음성적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곳으로 숨어들었음.
- 無資料 거래도 아직 없어지지 않았음. 이런 문제들은 課稅段階(96년 綜合所得稅 실시) 이후에 가시화할 것임.

- 富의 偏在의 시정도 그것이 장기적인 문제이므로 아직 평가할 시기는 아님.
- 資金 配分の 歪曲 문제도 시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擔保 能力이나 信用이 없는 中小企業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일임.
 - 實名制 실시 후 中小企業의 資金難은 가중되어 全國 어음不渡率은 93년 3/4분기에 약 0.11% 수준에서 93년 4/4분기부터는 0.14- 0.16% 수준으로 급등하였음. 어음부도율의 주된 급등 원인 중 하나가 사채 시장이 위축된데다가 제도권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데에 있음.
- 결론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금융실명제 소기의 목표 달성도는 매우 낮음.

2. 實名 轉換實績과 波及效果

1) 實名 轉換實績

-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부는 기존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강력히 유도하였음.
-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미전환 비실명 예금의 중과세 및 매년 10% 씩, 최고 6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
- 이에 따라 실명예금의 실명 확인 및 가명예금의 실명 전환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

<實名 確認 및 轉換 實績(94.6.30)>

	義務期間 (93.8.13-10.12)	94.6.30
實名 預金 確認率(%)	81.3	92.4
假名 預金額(억 원)	28,342	28,342
實名 轉換額(억 원)	27,604	27,785
轉換率(%)	97.4	98.0
未轉換額(억 원)	738	557
借名 實名 轉換額(억 원)	34,775	35,049

자료: 재무부.

- 그러나 차명예금의 전환은 약 3조 5천억원으로 추정 규모 24조원(총 금융자산의 10%)의 15%에도 못미치고 있음. 이는 차명이 대부분 당사 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2) 經濟 波及效果

- 금융실명제 실시전 정부는 실명제가 實物景氣 및 金融市場에 長期間에 걸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음.
- 景氣는 기업의 投資心理 低下에 따라 設備 投資率이 낮아지고, 經濟 成長率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이와 함께 輸出 鈍化에 따른 貿易收支 赤字를 예상하였음.
- 金融市場도 예금의 일시적 大量 引出 사태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었고, 通貨放出에 따른 인플레이 심화, 證券市場의 엄청난 혼란을 예상하였음.
- 그러나, 이런 부정적 효과는 짧은 시간동안만 지속하여 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았음.

가. 實物 經濟

- 경기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별로 영향을 받지않고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였음.
- 실명제가 실시된 93년 3/4분기와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8%와 6.4%의 증가를 기록하였음.
- 93년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지속하던 기업의 설비 투자도 3/4분기부터 완전한 증가세로 돌아섰음.
- 수출도 엔고의 효과와 선진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비교적 빠른 폭의 회복세를 기록하였음.
- 소비자 물가 역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음.

<실물 경제 지표>

	93				94	
	1/4	2/4	3/4	4/4	1/4	2/4
GNP 성장률	3.9	4.8	6.8	6.4	8.8	-
설비투자	-11.8	-1.1	5.0	9.4	20.2	-
수출	6.9	5.2	6.5	10.4	9.7	17.0
수입	-4.7	1.6	7.4	5.9	12.9	21.7
소비자물가	2.7	4.2	4.9	5.8	3.3	4.3

주: 소비자물가는 전년말 대비, 나머지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나. 金融市場

① 通貨・金利・株價

-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 통화, 금리, 주가 등은 一時的 衝擊이 있었으나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음.
- 실명제 이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방출된 통화로 總通貨 增加率이 20%대를 유지했으나 94년 들어서 15%대에서 안정되고 있음.
- 會社債 收益率도 금융 실명제 실시 이후 채권거래 위축으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94년에 들어서 12%대의 안정을 보임.
- 株價는 93년말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예탁금도 계속 증가하여 실명제 실시 초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남.

<金融市場 指標 推移>

		93.7	8	9	12	94.3	6
통화	M2 평잔 증가율(%)	18.9	20.6	21.5	17.3	15.8	15.9
	M2+CD 말잔 증가율(%)	14.9	17.7	20.8	18.6	17.7	20.1
	현금통화 말잔 (억원)	90,932	100,372	138,356	121,091	105,676	108,748
시중 금리	회사채수익률	12.9	13.6	14.1	12.2	12.4	12.4
	콜금리	14.6	13.7	12.5	11.7	12.1	12.7
주식	주가(포인트)	752	708.5	639.2	848.8	889.2	926.7
	거래량(만주)	2,365.6	1,906.8	2,036.3	4,360.4	2,951.4	3,585.8

② 金融機關 資金 흐름

-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했던 금융기관 資金 離脫 현상은 보이지 않았음.
- 은행, 신탁, 단자 등 금융 기관의 수신도 금융 실명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오히려 고수익 상품인 금전 신탁 상품을 중심으로 수신고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金融圈 受信 増減率>

	(%)					
	93.7	8	9	10	12	94.3
예금 은행	11.5	11.9	15.7	11.5	7.9	12.5
저축성 예금	20.2	21.3	20.6	19.6	16.6	16.9
요구불 예금	-9.5	-10.2	3.8	-8.9	-9.0	0.3
CD	-0.1	-1.6	-6.0	-5.4	37.0	33.3
비통화 금융 기관	27.9	26.8	25.1	25.2	21.4	22.4
은행 신탁	40.4	38.9	39.7	39.3	34.5	35.8
투자 금융	2.6	3.2	-4.5	-7.2	-19.2	-20.3
투자 신탁	68.2	63.4	55.8	52.1	31.9	42.5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③ 私債市場 및 不動産 市場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사채자금의 양성화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기대 이상의 사채자금 양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깊숙히 잠복하여 그동안 사채시장의 의존도가 높았던 中小企業의 不渡率이 실명제 실시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사태를 빚었음.(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금융실명제의 주요 이슈』중 '중소기업 자금난' 참조)
- 그러나 최근에는 실명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방법을 모색하면서 시장에 잔류하고자 하는 사채업자들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부동산이나 골동품, 미술품 등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의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外國의 金融實名制

1) 國家別 金融實名制

가. 美國

- 모든 金融資産에 대한 去來가 實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실명확인인 개인은 사회보장카드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법인은 납세

자번호를 사용함.

-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社會的 慣行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음.
- 綜合課稅制度를 실시하며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는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수취인 명목이 불확실한 경우 20%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나. 英國

- 모든 금융자산의 거래가 實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不文律과 慣行에 의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
-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해서는 綜合課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자 지급시 27%의 源泉徵收를 하고 있음.

다. 獨逸

-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미국 영국과는 달리 法制化되어있음.
 - 1919년도에 제정된 『바이마르 租稅徵收法』부터 법제화
 - 1977년에 구서독의 『租稅徵收法』으로 대체되었음.
-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93년 1월 1일부터 源泉徵收制度를 실시하고 있음.
 - 구서독에서 89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예금의 급격한 해외유출로 곧 폐지하였음.
- 실명의무 위반시에는 예금주에게도 1만 마르크의 벌금 부과.

라. 프랑스

-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
- 단, 과세 측면에서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綜合課稅와 分離課稅중 納稅者가 유리한 방법을 選擇할 수 있음.

마. 日本

-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 다만 假名去來를 줄이기 위하여 行政指導를 사용하고 있음.
- 80년에 금융실명제의 도입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회

- 의 의결 절차까지 마친바 있음.(이자 배당에 관한 종합과세제도)
-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소액 저축 등 이용자 카드(그린카드)』를 발급하여 실명 확인.
 - 그러나, 자금 해외유출, 부동산 투기,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등이 발생하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너무 컸음.
 - 1983년 3월에 施行을 延期하였음.
 - 1985년 3월에는 施行을 拋棄하였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分離課稅制度가 실시되고 있음.

<外國의 金融實名制 比較>

	실명제 대상	이자소득 과세제도	구속력
미국	모든 금융기관 거래	-종합과세제도 실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 -수취인명의가 불분명할 경우 원천 징수	관행에 의한 정착
영국	모든 금융기관 거래	-종합과세제도 실시 -이자지급시 원천 징수	관행에 의한 정착
독일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종합과세제도 실시 -통독 이후 원천징수 실시	법제화
프랑스	금융기관 거래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 과세 중 택일	
일본	가명거래 가능	-분리 과세	가명을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

2) 西歐 國家와 日本의 差異

- 서구 국가들에서는 금융실명제가 잘 실시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公式金融機關의 發達 過程과 利用 慣習의 差異에서 찾아볼 수 있음.
- 西歐 國家들에서는 오래전부터 金融機關이 去來의 決済 機關으로 자리잡아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있음.
- 반면 日本의 경우에는 去來의 決済가 慣習적으로 現金으로 이루어져 왔고, 金融機關은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되어 貯蓄機關에 보다 가까움.
- 韓國의 경우에도 개인수표나 신용카드보다는 現金去來가 주를 이루고 있음.

4. 金融實名制의 主要 이슈

1) 緊急命令의 法律化

- 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 긴급명령의 조속한 법률화가 필요.
- 외국의 경우에는 실명제가 오랫동안 사회의 관행에 의해서 제도화된 것임.
- 실명제가 국가의 강제력으로 도입된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의 慣習으로 定着되는 것이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임.
- 따라서 현재 긴급명령 형태의 실명제를 빨리 법률화하여 국민의 관습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 課稅制度

가. 稅制 改革

- 금융 실명제의 실시는 세계개혁의 필요성을 가져왔음.
 - 합리적인 세제는 效率性과 衡平性, 그리고 稅收 確保 機能을 갖추어야 하는데,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기존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임.
 - 현행 세제는 실명제 이전의 낮은 課稅捕捉率을 前提로 구성되어있는데 金融實名制의 基本 方向인 課稅 베이스의 擴大에 초점을 맞춰서 稅制 改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 실명제 실시의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조세감면 규제법을 포함한 13개의 稅法 改正案을 마련하여 93년 9월에 발표하였으나 세율 인하폭이 너무 낮아 실명제의 보완조치로서의 實效性이 未洽하다고 보임.
- 정부는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세부담을 낮추고 과세 자료와 세원의 양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였으나,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율 인하폭이 너무 작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93년 9월 稅法 改正案 引下幅>

	인하 폭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의 3%
법인세	2%
상속 및 증여세	5%

- 재무부는 현재 우리 나라의 세 부담이 타국에 비해 크지 않고 과세베이스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폭적 세율인하는 정부 재정수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 정도를 보아가면서 세율의 추가인하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 세율의 대폭적 인하조치가 선행되지 않고는 무자료 거래 등 음성 세원의 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 또한 세율의 대폭 인하는 무자료 거래와 같은 음성 세원의 양성화에 따른 과세베이스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통한 과세베이스의 확대 효과도 있음.
 - 단기적으로 초래될지도 모르는 정부 세입 예산상의 차질은 국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

<參考: 主要國의 稅率 比較>

	韓國	美國	日本	臺灣
소득세율	최저 5% 최고 50%	3단계 15, 28, 31%	최저 10% 최고 50%	최저 6% 최고 40%
법인세율	최저 18% 최고 32%	3단계 15, 25, 34%	37.5%	3단계 0, 15, 25%

나. 稅政 改革

-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결정이 가능한 謄利 自進 申告 納付制度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현행 과표 위주의 추계 방식에 의한 세액 산출 방법은 소득의 누락울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
 -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동시에 소득의 의도적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自進 申告制度가 慣行化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재산세 및 양도세의 세액산정방식을 과표위주에서 實去來價格 위주로 轉換하여야 할 것임.
 - 재산세 및 양도세의 산출을 위한 부동산 과표는 현재 실거래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액 산출 방식을 실거래액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실명제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 양도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저항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감면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세무 행정의 개편과 과학화가 절실히 요구됨.
 -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실시와 부동산 실거래액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納稅者別 稅源管理가 가능하도록 세무 조직이 개편되어야 함.
 - 국세청의 전산 능력 확충이 시급함. 종합 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약 1억 8천만 개로 추산되는 금융 기관 구좌의 금융 소득 자료를 처리해야 함.
- 종합과세제도의 도입시에는 사치성 소비재의 과소비, 해외여행의 급격한 증가, 음성자금의 해외 도피, 돈세탁, 조세저항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금융 실명제를 무자료 거래 등 탈세라는 음성적 금융 거래의 판행을 법적으로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때 법적 재정비에 앞서 판행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종합 소득으로 합산되면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조세 저항 및 탈세의 동기를 제거해야함.
 - 종합 과세 실시 전에 현재 18종으로 되어 있는 세금 우대 저축 상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함.
 - 근로자 면세점을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금융 실명제로 소득의 많은 부분이 노출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탈루 유혹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임.
 - 금융기관의 전산능력 확대가 필요함. 그동안 계속된 금융전산망사업의 추진으로 93년 현재 금융기관 전산화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탁과 새마을 금고는 50%에 불과함.

3) 個人の 秘密保障과 公共目標 遂行의 造化

-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 국민과 기업 등 모든 구성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조항이 너무 엄격하여 감사원,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감사 및 조사기관이 공공목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음.
- 금융실명제의 실시 목적인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 활동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비밀보장은 자가당착의 모순임.

- 또한 마약거래와 같은 범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금융거래도 비밀보장을 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의 행위가 국가의 법과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에 과거의 음성자금에 대한 벌칙을 완화해주어서 심리적 동요를 막는 것이 바람직함. (소급입법 부분 참조)

4) 遡及立法

- 비실명 금융거래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와 함께 한순간에 불법이 되었음.
- 이 경우, 소급입법을 통해서 과거의 비실명거래까지 불법화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과거에 국가 경제개발을 위한 저축증대 방편으로 허용한 것을 이제 와서 불법화하면 어떤 경제 주체도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게되어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됨.
- 정책의 미래지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과거 비실명거래를 소급입법에 의하여 불법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과거 비실명거래에 대한 소급입법의 강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동요를 막고 정책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방법임.

5) 中小企業 資金難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사채자금이 깊숙히 잠복하여 그동안 사채시장의 의존도가 높았던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 실명제 실시 직후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방출하였으나 중소기업의 담보력과 신용 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임.
- 93년 4/4 분기부터는 시중금리가 12%대로 하향 안정된 가운데 어음 부도율은 급증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어음 不渡率 推移>

									(%)
	93년							9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분기			
어음부도율	0.12	0.11	0.11	0.12	0.11	0.11	0.16	0.14	0.16

5. 補完 課題

1) 金融實名制의 文化的 定着

-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문화적 컨센서스가 필요함.
- 외국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가 금융기관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관행으로 제도화 되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실명 제도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적 물리력으로 실명제가 도입되어 국민이 아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못함.
- 따라서 실명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음.
 - 거래 결제수단을 현금에서 개인수표와 신용카드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 부부별산제는 비실명 시대에 적합한 것으로 실명제의 관행이 정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실명제의 취지에 맞는 부부 공동재산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인식도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정경유착, 부정부패, 탈세 등의 문제는 국민의 윤리관이 제고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과거 비실명 재산에 대한 소급입법을 완화하고 대신 상속세, 소유분산 등 다각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부의 편재를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임.

2) 借名 去來의 縮小 및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 強化

- 차명 거래는 금융기관의 수신 중대 노력과 실제 소유주의 탈세 목적이 만들어낸 탈법적 금융 거래 형태임.
- 96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차명예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합법 차명의 경우는 근절하기 어려움.
- 따라서 차명 거래는 방지라는 차원보다는 축소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 차명 거래의 축소를 위해서는 우선 금융거래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하고 금융기관이 외형위주 수신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 예금주의 경우에는 서명거래 확대를 통하여 본인에 의한 금융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차명 거래의 유인을 제공하는 세금 우대 저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3) 私金融의 制度圈 吸收

- 금융실명제 실시 직전의 사채시장 규모는 11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총통화의 11.4%에 해당하는 수치임.
- 금융실명제를 실시로 사금융 자금이 전부 제도권으로 유입되기는 어렵지만 정책 대안을 통해 유입 규모를 확대하도록 해야함.
 - 자산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
 - 상거래의 현금 거래 관행 개선
 -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 및 감독 강화
- 금융 자산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인하
 - 사금융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신설
 - 중소·영세 사업자를 위한 공식 금융기관의 활동 확충
 - 일본의 대금업법과 같이 비금융기관의 금융 거래 양성화(원금과 이자율을 신고할 경우)